

2024년도 임원선거

선거관리지침

(제정 : 2024. 3. 7.)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선거관리지침 개요

1. 목 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법” 이라 한다)과 대한민국의월남전참전자회(이하 “본회” 라 한다)정관 제17조(임원선거) 및 규정 제8호(선거관리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3월 28일 본회 임원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현하여 모든 회원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임원을 선출하고자 함.

2. 지침 제정 경과

2024. 2. 22(목)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김부길 및 위원 변주태, 박향희, 이근호, 우정성 총 5인이 본회 정관 및 규정(제8호)를 검토하고, 제반 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협의를 거듭한 결과 본 지침을 최종 심의·의결하였음.

3. 선거 일정(규정 제8조)

○ 선거 공 고 : 2024. 03. 08(금)

☞ 17개 시·도지부 공고문 부착(지부는 각 지회까지 전달, 지회에서도 부착)

○ 선거인 명부 검증/확정 : 2024. 03. 09.(토) ~ 03. 11.(월) -----(3일간)

★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선거인 명부 심사 및 확정

☞ 조직국 선거인 명부 제공(선관위 의견수렴)

○ 선거인 명부열람 : 2024. 03. 12(화) ~ 03. 13(수) -----(2일간)

* **주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교부 및 반출 불인정

○ 입후보자 등록 : 2024. 03. 14(목) 09:30 ~ 03. 16(토) 17:00시 -(3일간)

☞ 등록자료 검증(고엽제전우회 및 관련부서) 및 심사준비

○ 입후보자 자격심사 : 2024. 03. 17(일) ~ 03. 20(수)까지----- (4일간)

★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후보자 자격심사

☞ 심사자료 준비(관련 정관, 규정, 참전법 및 심사서 등)

○ 후보자 확정공고 : 2024. 03. 20(수) -----(자격심사 종료후)

☞ 17개 시·도지부 및 각 지회. 본회 자유게시판

- 기 호 추 첨 : 2024. 03. 20(수) ----- (자격심사 종료후)

- 선거공보물 검열/제출 : 2024. 03. 20(수)----- (자격심사 종료일)

☞ 규격(A4용지 4쪽 이내). 공보물 일괄 송부(17개 시·도지부 및 선거인)

- 투·개표 참관인 등록 : 2024. 03. 20(수)----- (자격심사 종료일)

☞ 투·개표 참관인 : 각 후보별 2명 이내

- 선거사무소 신고(접수) : 2024. 03. 20(수)----- (자격심사 종료일)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거사무담당자 연락처, 기타

○ 선거운동 기간 : 2024. 03. 21(목) ~ 03. 27(수) 17:00시까지 ----- (7일간)

☞ 후보자 합동 소견 발표(전국 1개 이상 권역별)----- (**협의 후 결정**)

★ **선거관리위원 소집** : 권역별 위원 배정 운영

○ 선거일시 및 장소 : 2023. 03. 28(목) 11:00시. 장소 : 공군호텔(서울 대방동)

★ **선거관리위원 소집** : 투·개표 감독, 집계 및 발표

선거관리지침

제1조(후보자의 자격)

- ① 참전법 제19조에 의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정관 제8조①항)
- ② 본회 회원으로서 거주지 지회에 등록된 회원(정관 제9조①,②,③항)이라야 한다.
- ③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후보 등록일 현재 3년 이상 경과된 회원(정관 제15조 제1호)이라야 한다.
- ④ 정관 제8조(회원)제①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참전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본회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으로 한다.
- ⑤ 신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규정 제12조①항3호)
- ⑥ 규정 제12조②항 자격 배제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출마 할 수 없다.
 - ㉠ 직위를 이용하여 매관매직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본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국가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였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②항에 의거
 - ㉤ 참전 중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 등의 사유로 조기 귀국 당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조(선거인) 선거인은 정관 제24조(총회의 구성)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고일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자는 재판판결에 따라 투표권을 정한다.
2. 정관 제24조 총회의 구성원 중 회장 또는 임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위를 사퇴할 경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상실한다.
3. 본회 회원으로 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규정 제11조)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2024. 3. 11.까지 확정한다.
- ② 확정된 선거인 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되, 열람시 이의 복제, 복사 또는 촬영을 금지한다.
 2. 선거인 명부 열람시에는 반드시 열람자가 열람대장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 ③ 제②항제1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확보한 선거인 명부의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으로써 피해당사자로부터 신고(6하 원칙)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반사항에 따른 배상(인적·물적 등) 등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지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본회 규정 제11호(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에 회부한다.
- ④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하여 정정, 삭제 또는 등재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등록)(규정 제13조)

-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16까지 3일간이며, 등록 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 접수해야 한다.

② 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별지서식 #3) -----1부
2. 회원 증명서(별지서식 #4, 현직 임원 및 지부장은 제외)-----1부
3. 인사가록원서(규정 별지서식 #5) -----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학위증명서 원본 첨부
4.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과월기록기재)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내, 의료보험공단 건강진단결과) -----1부
7. 현직책 사임서(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1부
8. 각 서 -----1부
9. 기탁금 납입 영수증(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1부
10.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탈퇴 확인서(정관 제9조 제④항) -----1부
11. 본회 회원증 사본(회원 규정 제6조 제③항) -----1부
12. 서약서(별지 서식 #12) -----1부

제5조(기탁금)(규정 제21조)

① 기탁금은 임원선거 제반 소요비용(임시총회 비용, 선관위 운영비, 선거준비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총합하여 산정하고, 단독 후보자는 5,000만 원, 후보자 2인 시에 각 4,000만 원, 3인 이상은 각 3,500만 원으로 한다.

② 본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 등록신청 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탁금(3인 이상 기준) 3,5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명세표를 등록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심사결과 단독 후보 또는 후보자 2인으로 확정된 때에 후보자는 후보자 확정 당일 잔여 금액(단독 후보 1,500만 원, 후보자 2인 시 각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입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816937-04-013065. 예금주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③ 기탁금은 선거업무에 관련한 제반 비용(대의원 출장여비, 식비,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업무 종사자의 각종 근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회의소집 요구에 따른 출장비 지급액(교통비 및 식대 제외)은 1인 1일 20만원으로 한다.

- ⑤ 선거업무 종사자의 평일 시간외 근무는 오후 16:00부터 기산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초과근무 1시간 당 10,000원으로 한다.
- ⑥ 등록 후보자가 자격심사 종료 전에 사퇴하거나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당선된 경우를 포함)에 선거 제반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한다.
- ⑦ 입후보자 확정공고 후 사퇴하거나 선거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면 기탁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탁금에서 실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⑨ 기탁금 집행 잔액은 본회 운영자금으로 귀속한다(규정 제21조 ②항).
- ⑩ 선거관리에 긴급 또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 개산금으로 그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6조(선거관리 및 직원)(규정 제5조)

- 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한다) 주관으로 관리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 이라 한다)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심사 및 입후보자 확정 공고)(규정 제14조)

- ①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선관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해당 후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등록서류의 적격 여부, 사전선거운동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 ④ 선관위에서 심의/확정된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8조(기호추첨)(규정 제15조)

- ①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자 확정 공고 후 입후보자(대리인)를 소집하여 회장후보 선거기호를 추첨한다.
- ② 기호추첨 소집에 불응한 입후보자는 사퇴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한다.
- ③ 기호추첨은 입후보자의 의견에 우선하여 추첨함을 활용하여 공개 추첨한다.

제9조(선거공보 검열)(규정 제17조)

- ① 회장 입후보자로 회장후보로 확정된 자는 확정 공고 즉시 선관위에 선거공보(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제안서)에 대한 심사/검열을 실시하고, 검인을 날인한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일괄 배부한다
- ③ 검열을 받지 아니한 공보물(유인물)은 살포하거나 배포하지 못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규정 제16조)

- ①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거수 또는 기립표결, 만장일치 표결 방법 중 선관위에서 택일한다.
- ② 회장 선출방법
 - ㉠ 후보자는 투표 전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 재적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선거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최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③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방법
 - ㉠ 회장 후보자는 부회장 후보자(5인 이하), 감사 후보자(2인 이하), 이사후보자(10인 이하)를 추천하여 총회 개최 전에 선관위에 제출(별지 서식#3)하여야 한다.
 - ㉡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자신이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서 발표하고, 총회의 인준(거수·기립)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

제11조(선거운동 방법)(규정제17조)

- ① 회장에 출마할 자는 선거 공고일 이전이라도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는 후보자 확정 공고 다음 날 09:00시 부터 선거 전일(前日) 17:00시 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관위원, 중앙회 직원, 각급회 회직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옹호 또는 격려하는 일체의 발언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는 2인의 투·개표 참관인을 선관위에 등록(붙임 참조)하여야 하며, 선거 당일 참관인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참관인 패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 ④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1회, 전자우편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1회, 권역별 합동연설회 1회로 한정한다.
- ⑤ 선거공보는 A4용지 4쪽 이내로 제작하여 선관위의 검열을 거쳐 검인을 받은 후 다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일괄하여 선거인에게 우송 또는 배부한다.
- ⑥ 전자우편을 통한 문자메시지는 전송할 내용을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하여 검열·검인을 받아야 하며, 선관위가 이를 일괄하여 선거인에게 전송한다.
- ⑦ 제⑤항의 선거 공보물(인사 기록원서 등)에 후보자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 의결결과에 따라 후보를 취소할 수 있다.
- ⑧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의 배포 및 배부와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⑨ 후보자가 대의원이나 그 가족(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품 또는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회유, 협박 및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모함, 인격 모독,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⑩ 본회 회원이 제⑨항의 금품 수수 또는 식사 등 향응의 제공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하여 선관위에 제보하는 경우, 선관위 확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그 금품(시장가액·영수증)금액의 10배(총 오백만원 이하) 범위내의 신고포상금을 선거관리 기탁금 잔액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⑪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본회 각급 회의 사무실, 차량 및 비품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 ⑫ 후보자가 위 조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조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선관위 의결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 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을 취소할 수 있고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⑬ 선관위는 선거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거인이 회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역별(수도권, 비수도권 등)로 1회에 한하여 합동 연설 및 토론의 장소를 마련하고 후보자가 공약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⑭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별 선거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표)(규정 제18조 및 제19조)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는 규정에서 정한 별지 양식으로 제작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날인한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③ 선관위는 봉인된 투표함과 기표소를 선거 장소에 설치한다.

④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출석 확인(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투·개표소에 선관위에 등록된 참관인 2명을 배치하여 감독한다.

⑦ 투표지의 유·무효 판정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⑧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며 임시총회장에게 선거결과를 통고한다.

제13조(선거결과 승인절차 및 보고)(규정 제20조)

① 선거결과 선임된 임원은 당선자 발표 즉시 규정에서 정하는 별지 양식의 취임승락서(#11)와 서약서(#12)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약력표와 선거록(규정 별지서식 #13)을 국가보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침의 확정 및 배부)(규정 보칙 제1조)

- ① 2024년도 임원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지침에서 정한다.
- ② 선거관리지침은 선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한다.
- ③ 규정과 선거관리지침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 ④ 선관위는 임원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제①항,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라 선관위가 의결·확정한 『2024년도 선거관리지침』을 회장입후보자에게 각각 1부씩 배부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보칙에 따라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제2조 이 지침은 2024년도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본 지침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2024. 3. 7.(목)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김부길		
위 원	변주태		
위 원	박향희		
위 원	이근호		
위 원	우정성		
위 원			
위 원			
간 사	안금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24 임원선거 세부 일정계획표

월/일	업 무 명	업 무 진 행 사 항
02.19(월) D-38	이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총회 부의안건 심의
02.22(수) D-3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7명(위원장 포함) ○ 간사 등 선거사무 지원 종사자
02.23(금) D-34	선관위 회의(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 상견례 ○ 선거관리지침안 검토 ○ 선거준비사항 검토 및 논의
03.04(월) D-24	선관위 회의(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지침안 검토 ○ 선거준비계획 검토 및 선거대책 논의
03.07(목) D-21	선관위 회의(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지침 의결 ○ 선거준비 진행사항 보고
03.08(금) D-20	선거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03. 08(금) 11:00시 ○ 장소 : 본회 홈페이지, 각급회 게시판 등
03.09(토) ~ 11(월) D-19 ~ D-17	선거인 명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명부 검토 및 정리(궐위자 확인) (순번, 지부, 지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03.12(화) ~ 13(수) D-16 ~ D-15	선거인 명부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03.14(목) ~ 16(토) D-14 ~ D-12	후보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류 검토 및 등록증 발부 ○ 후보자 면담(선거관리위원장)
03.17(일) ~20(수) D-11 ~ D-8	후보자 자격 심사 (선관위 전원 참석) - 선거관리지침 - 개인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확정 및 공고, 기호추첨 ○ 투·개표 참관인(2명) 명단 접수 ○ 선거사무소 신고서 접수(주소, 전화번호 등) ○ 선거공보 접수, 검열 및 선거인에 송부

03.21(목) ~27(수) D-1~D-7	권역별 합동 유세	○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선거운동 계도 (위규자 검증/조치)	○ 선거운동 계도 및 지도·감독(문서 발송) ○ 위규사례 접수, 확인 및 전파 ○ 위규자 조치 및 통보
03.28(목) D-day	임시 총회 및 선거	○ 임시 총회 개최 ○ 회장 선거 및 당선자 확정(당선증 교부) * 공증 변호사 입회 ○ 부회장, 감사, 이사 후보 추천자 선출(확정) ○ 선거록 작성
기 타 (수시)	○ 선관위 소집	○ 안건 상정 심의·의결(긴급 회의 포함) ○ 권역별 합동 유세 및 회장선거일
	○ 선거인(대의원) 지원책 강구	○ 교통비, 식대 지원방안 ○ 선관위원 출장여비 지급수준 책정
	○ 선거행사장 방문 - 투·개표 동선, 대기실 등 확인 - 준비물 확인 - 각종 서식 등	○ 총무국 - 임시총회장 예약, 회의록 작성 - 투표함(2) 및 기표소(2), 투표용지 제작, - 각종 준비물 점검표 작성 및 확보 ○ 조직국 - 선거인 명부 작성 * 고엽제 중복 여부 조회 및 확인 - 질서유지 및 안전요원 배치 운영 - 제한구역 설정, 경계대상자 선정 ○ 선양국 -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등 명찰 제작 - 선거인, 투표소 배치도